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총무위원회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3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설치) (생략) 1. <u>운영위원회 5명</u> 2. <u>총무위원회 7명</u> 3. <u>산업건설위원회 6명</u>	제2조(상임위원회설치) (현행과 같음) 1. <u>운영위원회 5명 이내</u> 2. <u>총무위원회 5명 이내</u> 3. <u>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u>
제4조(상임위원회위원) ①(생략) ② <u>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u>	제4조(상임위원회위원) ①(현행과 같음) ② <u>삭제</u>
제7조(특별위원회) ①~②(생략) 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 를 둔다. ④~⑤(생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u>윤리특별위원회</u> ----- ④~⑤(생략)